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인사운영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- 가. 조직내 인력구성, 기구·정원, 제도 등 인사관련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필요
- 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승진 및 보직관리 규정, 특별승진 등의 규정 변경 필요
- 다. 「특허청 위임전결규정」 개정에 따라 국장 및 소속기관장에 위임되었던 전보권 위임 사항 삭제 및 특허심판원 조직구조 개편 반영 필요
- 라.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인사운영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행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

◇ 주요내용

- 가.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의 규정화(제5조)
- 나. 승진 및 보직관리 규정 정비(제13조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 제3호, 제19조, 제21조, 제25조, 제36조, 제39조의2)
- 다. 「특허청 위임전결규정」 개정 및 특허심판원 조직구조 개편 반영(제3조, 제6조, 제36조, 제39조)
- 라.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(제1조 내지 제3조, 제60조 내지 제73조, 제74조, 제76조)